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 신청 여부	여[], 부[]	미신청 투자금액 합계	
④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 여부	여[], 부[]	미인정 투자금액 합계	
⑤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 여부	여[], 부[]		
⑥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②① + ②⑥)			

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 (=①⑦)

⑦ 투자종류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여부	⑨ 총 투자 예정 금액	⑩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⑮ 누적투자 대상금액 (⑩와⑭ 중 큰 금액)	⑯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	⑰ 투자 금액 (⑮ - ⑯)
				⑪ 해당 과세연도말 총투자 누적액	⑫ 총 투자 예정비	⑬ 진행률 (⑪/⑫)	⑭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⑨ × ⑬)			
계										

나. 그 외 투자금액 (=①⑧)

투자종류		①⑧ 투자금액	
일반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⑧이 '여' 인 시설		
	⑧이 '부' 인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⑧이 '여' 인 시설		
	⑧이 '부' 인 시설		
계			

다. 기본공제금액 (=②①)

투자종류		①⑨ 공제대상 투자금액 (=①⑦+①⑧)	②② 공제율	②③ 기본공제금액 (=①⑨ × ②②)
일반시설			1%, 5%, 10% (3%, 7%, 12%)	
신성장사업화시설	⑧이 '여' 인 시설		3%, 6%, 12%	
	⑧이 '부' 인 시설		(6%, 10%, 18%)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⑧이 '여' 인 시설		8%, 8%, 16%	
	⑧이 '부' 인 시설		(15%, 15%, 25%)	
합계				

라. 추가공제금액 (=㉔)

투자종류		㉒ 공제대상 투자금액 (=㉑)	㉓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㉔ 초과액 (=㉒-㉓)	㉕ 공제율	㉔ 추가공제금액 $\text{Min}[(\text{㉒} \times \text{㉕}), (\text{㉑} \times 2)]$
일반시설					3%(10%)	
신성장 사업화시설	㉖이 '여' 인 시설				3%(10%)	
	㉖이 '부' 인 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㉖이 '여' 인 시설				4%(10%)	
	㉖이 '부' 인 시설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 1.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중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㉕ 임시 투자 세액공제율 적용 여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를 적습니다.
- "㉗ 투자종류란": 일반시설 투자금액,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금액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신성장사업화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합니다.
- "㉘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여부"란: 해당시설이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를 적습니다.
- "㉙ 진행률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 "㉚ 누적투자 대상금액"란: ㉙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㉙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㉚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㉛ 공제대상 투자금액"란 ㉚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과 ㉛ 그 외 투자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㉜ 공제율란 중 일반시설란 및 신성장사업화시설란의 괄호 안의 공제율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을 말하며, ㉜ 공제율란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란의 괄호 안의 공제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을 말합니다.
- "㉝ 공제대상 투자금액"란: ㉛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㉞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란: $[(\text{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 \div 3) \times (\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div 12)]$ 로 계산하며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㉞ 공제율란의 괄호 안의 공제율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을 말합니다.
- ㉔ 추가공제금액란의 추가공제금액은 ㉞의 초과액의 합계액에 대해 적용하며 ㉔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